

의안번호	2215656
의 퇴 인	송재봉 의원
회 답 일	2026. 1. 6.
추계번호	25F726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 이차전지산업 국내 생산비용 세액공제 도입, 공제액 이월공제,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 권리 양도 특례
- 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 권리 양도 특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이차전지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이차전지 제품 생산비용의 20% 세액공제 - 연간 공제 한도: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% - 요건: 국내 소재 생산시설에서 최종 생산공정 수행 - 적용기한: 2035년 12월 31일	
2	안 제144조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○ 이차전지산업 생산비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- 이월공제 기간: 10년	
3	안 제144조의2 (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이차전지 제품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해당 과세연도 미공제금액을 환급	
4	안 제144조의3 (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○ 이차전지산업 투자세액공제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대한 권리 양도 허용	
5	안 제144조의4 (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이차전지 제품 국내 생산 세액공제의 해당 과세연도 미공제금액을 환급	
6	안 제144조의5 (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○ 이차전지산업 국내 생산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 환급에 대한 권리 양도 허용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 (이차전지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4조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상동
3	안 제144조의2 (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	상동
4	안 제144조의3 (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상동
5	안 제144조의4 (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)	상동
6	안 제144조의5 (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상동

2. 상세 사유

가. 이차전지산업 생산비용 세액공제(안 제100조의35, 제144조, 제144조의4, 제144조의5)

□ 개정안은 이차전지산업 생산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, 공제액 이월공제와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 권리 양도 특례를 제공함에 따라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이차전지 제품을 국내에 소재한 생산시설에서 최종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20%를 세액공제
 - － 이차전지 제품은 이차전지 완제품, 부품, 소재 등으로 동법 시행령 규정 사항
 - － 생산량과 생산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동법 시행령 규정 사항
 - －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세액의 30%를 한도로 설정

□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로 해외 생산이 확대되면서 사용량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지만, 국내에서 생산한 이차전지 제품의 수출량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¹⁾²⁾³⁾

- 배터리 수출량(천톤): ('21) 179.6 ('22) 203.7 ('23) 194.6 ('24) 196.8 ('25) 147.7
- 배터리 수출액(억달러): ('21) 57.6 ('22) 73.4 ('23) 72.7 ('24) 54.2 ('25) 38.3
- 사용량 기준,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(%): ('23) 23.1
 - ※3사(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, SK온) 합계 기준
- 이차전지 해외 직접투자(억달러): ('21) 17.6 ('22) 35.9 ('23) 54.0 ('24) 44.7

□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를 비롯해 이차전지 제품의 구체적 생산량 및 비용구조에 근거해 생산량 및 생산비용 수준을 추정해야 하나, 이차전지 제품의 범위와 생산량과 생산비용의 산정방식은 시행령 규정 사항이므로 향후 정책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1) 도원빈, 「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방향」, Trade Focus 2024년 14호, 한국무역협회, 2024.4월

2) 한국무역협회, K-stat, HSK코드: 850760 기준

3) 수출입은행, 해외직접투자통계, 업종 소분류: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기준

나. 이차전지산업 투자 세액공제(안 제144조의2, 제144조의3)

- 개정안은 이차전지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 권리 양도 특례를 신설하므로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현행 기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·감면이 적용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액을 환급받거나 환급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별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, 투자 규모, 미공제금액 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지만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다. 소결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차전지산업 국내 생산비용에 대해 세액공제, 공제액 이월공제,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 권리 양도 특례를 도입하고, 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해 미공제금액 환급 및 환급 권리 양도 특례를 규정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